의안번호	2207019
의 뢰 인	이병진 의원
회 답 일	2025.1.17.
추계번호	24E646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농업인을 위한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해 2030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529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2,646억원(연평균 52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1,977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670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농업인을 위한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(안 제105조제1항)	−529	−529	−529	−529	−529	−2,646	−529
− 국세(74.7%)	−395	−395	−395	−395	−395	−1,977	−395
− 지방소비세(25.3%)	−134	−134	−134	−134	−134	−670	−134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	○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설 − 적용기한: 2030년 12월 31일	−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	○	−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세수효과는 '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의 공급가액 × 세율 10%'로 추계

○ 최근의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 공급가액을 바탕으로 추계하되, 추계기간 동안 공급가액이 최근 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제

❑ 개정안의 부칙을 참고하여 세수효과가 2026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(공급가액) 농업인을 위한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의 공급가액은 2019~2023년 연평균 5,293억원(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자료) 수준

[표 2] 농업인을 위한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의 공급가액

(단위: 억원)

유종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
공급가액	5,527	5,132	5,060	5,396	5,349	5,293

주: 각 연도별 농산물 운송용역의 공급가액은 매년 농산물 운송비용에 농산물 출하단계의 유통비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(농림축산식품부)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(세수효과) 농업인을 위한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해 2030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529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2,646억원(연평균 52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1,977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670억원 감소 예상

[표 3] 농업인을 위한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세수효과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−529	−529	−529	−529	−529	−2,646	−529
− 국세(74.7%)	−395	−395	−395	−395	−395	−1,977	−395
− 지방소비세(25.3%)	−134	−134	−134	−134	−134	−670	−134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